고지건강체 할인 특별약관

제1조 (보험계약의 성립)

①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는 특별약관을 포함합니다. 이하 「보험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할 때 또는 보험기간 중 회사가 정한「고지건강체 할인 대상 계약 또는 해당 특별약관」에 한하여 보험계약자(이하「계약자」라 합니다)의 청약과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의 승낙으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고지건강체 할인 대상 계약 또는 해당 특별약관」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고지건강체 위험률을 적용하는 대상계약으로 합니다.

② 보험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이 없게 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도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2조(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

① 이 특별약관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청약이 있고 회사가 이를 승낙한 경우 회사는 청약한 이후의 해당 보험료부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 정한 바에 따라 고지건강체 위험률로 계산한 보험료(이하「고지건강체 보험료」라 합니다)를 적용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고지건강체 할인 대상 계약 또는 해당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단. 제6조(고지건강체 등급 변경에 관한 사항)에 의하여 이 특별약관에 가입을 할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이하「보험계약일」이라 합니다)을 기준으로 해당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3조 (피보험자의 가입자격)

①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는 제1호에서 정한 건강상태에 해당하고, 제2호에서 정한 가입자격을 충족한 자로 합니다.

1. 이 특별약관을 가입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흡연여부	1년이상 비흡연
체질량 지수(kg/m^2)	18.5~25.0

가. 1년이상 비흡연 이라 함은 적어도 최근 1년간 어떠한 형태와 종류를 불문하고 담배를 피우거나 씹거나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사용(이하「흡연(吸煙)」이라 합니다)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나.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란 체중(Kilogram)을 신장(Meter)의 제곱으로 나눈 값(Kg/m^2)을 말합니다.

2. 이 특별약관을 가입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가입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이 특별약관의 가입시점에 '특별조건부 특별약관' 및 '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을 부가하지 않고 해당 보험계약의 가입이 가능한 자

나. 이 특별약관 가입시점의 보험나이가 20세 이상인 자

② 제6조(고지건강체 건강상태 변경에 관한 사항)에 의하여 이 특별약관에 가입 할 경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를 만족해야 합니다.

제4조 (계약 전 알릴 의무 및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고지건강체 할인기준 충족여부 확인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 1 항의 질문사항을 알리지 않았거나 알고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리지 않고 이 특별약관의 적용전 납입하여야 할 보험료(이하「표준체 보험료」라 합니다) 보다 적은 이 특별약관에 따라 할인된 보험료(이하「고지건강체 보험료」라 합니다)를 납입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과 관계없이 청약 시점을 기준으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잔여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으로서, 이하 "정산금액"이라 합니다)을 계약자가 추가 납입하도록 하며, 이 특별약관은 해지됩니다. 계약자는「고지건강체 보험료」와 동일한 기준(보험기간, 납입기간, 피보험자의 가입나이 등)으로 산출된「표준체 보험료」를 차회 이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단, 보험료의 납입이 완료되거나 면제된 계약의 경우 계약자는 정산금액만을 추가 납입합니다.

③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청구한 추가보험료(정산금액을 포함합니다)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해당 특별약관의「고지건강체 보험료」의 「표준체 보험료」에 대한 비율에 따라 해당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제5조 (흡연상태 변경통지 및 흡연상태의 변경이 있을 때의 처리)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30일 이상 흡연을 한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이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서면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한「정산금액」을 계약자가 추가 납입하도록 하며, 계약자는 「고지건강체 보험료」와 동일한 기준(보험기간, 납입기간, 피보험자의 가입나이 등)으로 산출된「표준체 보험료」를 차회 이후 납입하여야 하고, 이 특별약관은 해지됩니다.
단, 보험료의 납입이 완료되거나 면제된 계약의 경우 계약자는 정산금액만을 추가 납입합니다.

③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청구한 추가보험료(정산금액을 포함합니다)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해당 특별약관의「고지건강체 보험료」의 「표준체 보험료」에 대한 비율에 따라 해당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 1 항의 통지의무를 30 일 이상 늦추었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 2 항 및 제 3 항을 준용하여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6조 (고지건강체 건강상태로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3조(피보험자의 가입자격)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자격이 생긴 경우 계약자는「표준체」에서「고지건강체」로의 건강상태 변경을 회사에 신청하고 이 특별약관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의 청약을 승낙한 경우 계약자는 청약한 날 이후의 해당보험료부터 할인된 보험료를 납입하며,「정산금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환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에 따라 회사가 승낙을 한 때에는 변경된 사항을 보험증권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험계약을 따릅니다.